

의안번호	2213794
의 퇴 인	서영석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2.
추 계 번호	25C5764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40%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자에 대한 부부감액 비율을 현행 20%에서 10%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조 4,089억원(연평균 4,818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소득하위 40%에 대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비율 단계적 축소(안 제8조)	2,760	2,919	3,438	7,283	7,689	24,089	4,81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 (기초연금액의 감액)	소득하위 40% 이하인 경우에는 부부감액 비율을 20%에서 10%로 단계적으로 축소 ※ (현행) 20% → (2027~2029년) 15% → (2030년~) 10%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 (기초연금액의 감액)	○	○ 과거 지원 대상자 수 및 지원액 추세를 고려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하위 40% 이하인 경우 부부감액 비율을 10%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노인의 소득 하위 70%가 수급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 있음
 - 본 추계서는 개정안이 명시하고 있는 ‘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하위 40%’가 전체 65세 노인의 소득 하위 40% 수준이라고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－ 기초연금급여 외에 제도운영비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
- 개정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 - 다만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부부감액 비율은 2027~2029년 15%, 2030년 이후 10%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반영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대상자 수) 통계청 「장래인구추계」¹⁾의 65세 이상 인구에 대상자 비율, 수급률, 대상자 유형별(국민연금 수급 여부, 부부 동시 수급 여부, 소득 감액 적용 여부 등) 수급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
 - 대상자 비율은 70%를 적용하고, 수급률 및 대상자 유형별 수급자 수 비율은 2021년~2024년의 추세를 적용
 - － 대상자 비율 70%를 적용한 수급 대상자 수는 2027년 811.8만명에서 2031년 939.2만명으로 증가 전망

1) 2023년 12월 공표 통계

[표 2]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및 수급 대상자 수

(단위: 만명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
65세 이상 노인	1,159.7	1,212.5	1,252.1	1,298.0	1,341.8
수급 대상자 수(70%)	811.8	848.8	876.5	908.6	939.2

자료: 통계청의 「장래인구추계」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소득하위 40% 이하와 소득하위 40% 초과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‘유형별 수급자 수 비율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말 기준 수급 실적을 해당 소득 구간 및 유형으로 나눈 후 산출한 수급자 수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
 -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말 기준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내에서의 소득 계층을 나누어 기초변수를 산출²⁾

[표 3] 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자 대비 소득하위 40%의 비율

(단위: %)

구 분			유형별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대비 소득하위 40%의 비율(2022~2024년 평균)
무연금자	부부2인	전액	48.5
		감액	0.0
국민연금수급자	부부2인	전액	29.6
		감액	4.5
직역연금수급자	부부2인	-	71.6

주: 이 표에서의 전액은 부부감액 80%가 적용된 수급자를 의미하며, 감액은 부부감액 외에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함께 적용된 수급자를 의미함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(연금액) 2025년도 기준연금액(342,510원)을 기준으로 매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(2025.9. 경제전망 기준)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추정치

(단위: 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
기준연금액	355,960	362,930	370,180	377,580	385,1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2)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노인 소득하위 70%(수급자)의 하위 57.143%가 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40%에 해당하므로,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말 기준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내에서의 소득 하위 57.143% 이하와 초과를 구분하여 기초변수를 산출(이는 70%에 못미치는 수급률은 고소득구간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 것을 의미함)

- (현행 제도 감액비율) 부부 동시수급자에 대한 감액 비율은 20% 적용, 가구 유형(단독·부부1인·부부2인)별 소득역전 방지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비율은 2021년~2024년의 평균 감액 비율 적용
 - (개정안에 따른 감액비율) 부부 동시수급자에 대한 감액 비율은 개정안에 따른 감액비율 적용, 가구 유형(단독·부부1인·부부2인)별 소득역전 방지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비율은 2021년~2024년의 평균 감액 비율 적용
- 추계결과,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40%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자에 대한 부부감액 비율을 현행 20%에서 10%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조 4,089억원(연평균 4,818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소득하위 40%에 대한 부부감액 비율 단계적 축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2,760	2,919	3,438	7,283	7,689	24,089	4,818

주: 제도운영비를 제외한 기초연금급여(국비·지방비 합산)에 대한 재정소요만 추계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 시행 시 부부감액과 국민연금감액 등 다른 감액을 동시에 적용 받는 사람들의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서는 현행 소득하위 40%의 가구 유형(단독·부부1인·부부2인)별 소득역전 방지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비율이 2021년~2024년의 평균 감액 비율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산함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